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12415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124155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18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태

변론종결 2022. 11. 30.

판결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18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당심에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2020. 6. 22. 남편인 D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모든 것은 남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잘 부탁한다. 내 도장도 남편이 갖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남편인 D에게 C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다. 원고가 2021. 1. 3. D와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 2) 피고의 남편인 D에게는 기본대리권으로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2020. 6. 22.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인 2021. 1. 3. D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원고로서는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남편인 D에게 C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갑 29~31(가지번호 포함)호증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0. 6. 22.경 남편인 D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모든 것은 남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잘 부탁한다. 내 도장도 남편이 갖고 다니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아닌 D이 2020. 11. 9. 무렵 도장방에 가서 만들어 온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진정한 보증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20. 6. 22.경 원고는 피고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피고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확인 절차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가 D 또는 C에게 피고로부터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위임장 등 문서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할 당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배우자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이 피고 명의의 이른바 막도장을 만들어 와 제시한 것 외에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연대보증계약 대리 체결을 위한 위임장이 없는 점, ③ 통상적으로 남편은 타인에 비하여 아내의 도장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D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할 대리권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최리지, 판사 강병하